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장



정 보 공 개 서

모드니푸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모드니푸드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 최초등록일 및 최종등록일	정보공개서 등록 번호	20221149	
	정보공개서 최초등록일	2022.11.01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2024.08.13	
가맹본부 주소 및 연락처			
가맹본부 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중앙로286번길 73, 1층(대저1동)		
대표 전화번호	1588-3064	팩스번호	-
가맹본부 홈페이지	-	가맹본부 이메일	powerz11@naver.com
가맹사업팀 전화번호	1588-3064	담당자 이메일	powerz11@naver.com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정보
2.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3. 가맹본부의 인수 합병내역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
5.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7. 직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8. 가맹본부 및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중식의 큰별』을 시작한 날
2. 『중식의 큰별』 연혁
3. 『중식의 큰별』 업종
4. 직전 3년간 사업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5. 직전 3년간 『중식의 큰별』 가맹점 수
6. 『중식의 큰별』 외의 가맹사업 현황
7. 직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8. 『중식의 큰별』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정보
10. 광고 . 판촉 지출내역
11. 가맹금 예치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2. 영업 중의 부담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물품 구입 및 절차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9. 광고 및 판촉 활동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3. 경영활동 자문
4. 신용 제공 등 내역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3. 교육 . 훈련의 주체
4. 교육 . 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 목록 및 주소
2.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3.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영업표지	주 소			
모드니푸드	중식의 큰별 외 1개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중앙로286번길 73, 1층(대저1동)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개인사업자	2021.10.09	안휘란	1588-3064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425-23-01487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동안 가맹사업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 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특수관계인 (직계존속)	오정임 /부산가야밀면	밀면의 법칙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서로39번길 20, 2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오정임	055-552-8811	-
관 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특수관계인 (직계존속)	오정임 /부산가야밀면	비상구쪽갈비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서로39번길 20, 2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오정임	055-552-8811	-
관 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특수관계인 (직계존속)	오정임 /부산가야밀면	빨꼬치닭 &닭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서로39번길 20, 2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오정임	055-552-8811	-
관 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특수관계인 (직계존속)	이순자 /대성각	중식의 큰별	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 144, 101호(암남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순자	051-912-3393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부산가야밀면	밀면의 법칙	2023.08.22.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서로39번길 20, 2층	오정임
		비상구쪽갈비	2021.10.25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서로39번길 20, 2층	오정임
		빨 꼬치닭 &닭발	2021.10.25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서로39번길 20, 2층	오정임
	대성각	중식의 큰별	2023.08.22.	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 144, 101호(암남동)	이순자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 (앞으로 『중식의 큰별』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중식의 큰별』	-
상 호	『중식의 큰별』 [] 점	-
상표(서비스표)		-
광 고		-
그 밖의 영업표지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 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	-	-	70,029	-	-
2022년	-	-	-	113,570	-	-
2023년	-	-	-	691,559	-	-

- ▶ 그 근거자료는 [별첨 1] 과 같습니다.
- ▶ 상기 매출액은 영업표지 [밀면의 법칙] 매출액입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 름	현직위	사 업 경 력		
			기 간	직 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안휘란	대 표	2021.10.09.~현재	모드니푸드 대표	경영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 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	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 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 분	가맹사업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모드니푸드 /안취란	가맹사업 경영	2023.08.22.~현재	밀면의 법칙(등록번호: 20220173)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가맹사업
		가맹사업 경영	2023.08.22.~현재	중식의 큰별(등록번호: 20221149)이라는 영업표지의 중식가맹사업
		가맹사업 경영	2021.10.25. ~ 2022.08.31. *정보공개서 자진등록취소	비상구쪽갈비(등록번호: 20211968)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가맹사업
		가맹사업 경영	2021.10.25. ~ 2022.08.31. *정보공개서 자진등록취소	빨꼬치닭&닭발(등록번호: 20212358)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가맹사업
특수관계 인 (배우자의 직계존속)	부산가야밀면 /오정임	가맹사업 경영	2022.03.03. ~ 2023.08.21.	밀면의 법칙(등록번호: 20220173)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가맹사업
		가맹사업 경영	2021.08.27. ~ 2021.10.25.	비상구쪽갈비(등록번호: 20211968)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가맹사업
		가맹사업 경영	2021.10.05. ~ 2021.10.25.	빨꼬치닭&닭발(등록번호: 20212358)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가맹사업
특수관계 인 (직계존속)	대성각 /이순자	가맹사업 경영	2022.11.01. ~ 2023.08.21.	중식의 큰별(등록번호: 20221149)이라는 영업표지의 중식가맹사업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 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영업표지사용, 인테리어,간판 ,판촉물 등에 사용	2022.07.08.출원 2024.03.25.등록	출원번호 4020220127426 등록번호 4021733800000	김민호	2034.03.25

-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중식의 큰별] 가맹사업 현황

1. 『중식의 큰별』을 시작한 날 : 가맹점 계약체결 사실이 없음
(직영점을 시작한 날 : 해당없음)

2. 『중식의 큰별』 연혁

가맹본부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성각	중식의 큰별	이순자	-	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 144, 101호(암남동)
모드니푸드	중식의 큰별	안휘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중앙로 286번길 73, 1층(대저1동)

3. 『중식의 큰별』 업종

영업표지	업 종	
『중식의 큰별』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중 식	짜장, 짬뽕, 탕수육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중식의 큰별』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	-	-	-	-	-	-	-	-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중식의 큰별』 가맹점 수

(단위 :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	-	-	-	-	-
2022	-	-	-	-	-	-
2023	-	-	-	-	-	-

6. 『중식의 큰별』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중식의 큰별』 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모드니푸드 /안휘란	밀면의 법칙	20220173	한식	0/1	59/1	54/0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중식의 큰별』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바로 전 사업연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에 대해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	-	-	-	-	-	-	-

서울	-	해당없음						-
부산	-	해당없음						-
대구	-	해당없음						-
인천	-	해당없음						-
광주	-	해당없음						-
대전	-	해당없음						-
울산	-	해당없음						-
세종	-	해당없음						-
경기	-	해당없음						-
강원	-	해당없음						-
충북	-	해당없음						-
충남	-	해당없음						-
전북	-	해당없음						-
전남	-	해당없음						-
경북	-	해당없음						-
경남	-	해당없음						-
제주	-	해당없음						-

8. 『중식의 큰별』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중식의 큰별』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0	0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중식의 큰별』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14]쪽을 참고하십시오.

구 분	수 단	기 간	지출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 고
			합 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 계		해당사항 없음				
광 고	소 계	-	-	-	-	
판 측	소 계	-	-	-	-	

11. 가맹금 예치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서울보증보험과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예정으로 가맹금 예치제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체결을 예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비 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주)	
보험계약자	모드니푸드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보험금액	예치가맹금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중식의 큰별』]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 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피해보상보험으로 대체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피해보상보험으로 대체
기타 비용 (인테리어, 주방설비 등)	가맹본부 또는 지정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금 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 고
총 계	4,400				오픈 전 해지시 가맹계약체결에 소요된 실제 비용 및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벌 공제 후 반환
가맹비	2,200	가맹계약 체결일 다음날 까지 예치	영업개시 이전 까지 계약해지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 비용	
최초교육비	2,200		교육 미실시	교육 개시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 분	금 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 고	
계약이행 보증금	1,000	가맹계약 체결일 다음날 까지 예치	- 가맹금, 물품대금 미지급 - 계약종료 후조치 (영업표지철거 등 원상회복의무)의 미이행	계약의 종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잔존 채무·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예정임.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 계	5,400
가맹비	2,200
최초교육비	2,200
계약이행보증금	1,000 (부가세 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8~19]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부가세포함/49.5㎡ 기준)

구 분	지급대상	금 액	3.3㎡당 금 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 고
총 계		31,210				매장환경에 따라 변동 가능
인테리어 (내부)	미정	24,750	1,650	협의	공사전 계약취소	-
간 판	미정	2,500		협의	공사전 계약취소	전면 3m 기준
설비류	미정	1,760	117	협의	발주전 계약취소	P 18. 물품구입현황 참조 -
초도물품	가맹본부	2,200		협의	발주전 계약취소	
POS 기	미정	렌탈	-	-	-	렌탈료 : 3만3천원/월

※ 위 도표상의 해당 항목 금액은 기준 평수의 가맹점 오픈시 예상금액입니다.

※ 인테리어 자체시공시 도면 및 설계비용과 감리비용으로 3.3㎡당 일금이십이만원 (₩220,000/부가세포함)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상.하수도 및 화장실 공사, 외부공사 및 철거, 냉.난방시설, 소방공사, 음향시설, TV, 전기/가스 증설, 오픈행사, 인.허가, 주방 후드, 덕트, 어닝, 외부테라스, CCTV 등의 비용은 별도입니다.

5) 가맹점 체결 및 당사 금전 입금 후 해약시 위약금

☞ 귀하가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 한 후(둘 중 빠른 시점) 일방적인 변심 등 귀하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에 지급한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위약별 규정에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 됩니다.

해 약 요 청 일 자	위 약 별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	정보공개서상의 예치금의 30%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10일 이내	정보공개서상의 예치금의 50%
계약 체결 후 10일 이후 가맹점 오픈 이전	정보공개서상의 예치금의 100%
계약 체결 후 발생하는 인테리어, 설비공사비용	실제 발생비용 전액
계약 체결 후 교육의 시행	교육비 전액

6)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 정 주 체	선 정 기 준
주체 : 가맹점사업자 지원 : 운영관리팀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의 책임으로 가부를 결정함.

7)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교 육 기 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신용불량자가 아닐 것.	성년을 원칙으로 함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종 업 원	•특별한 기준 없음	성년을 원칙으로 함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8)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9) 당사는 가맹금, 인테리어 비용등에 대하여 분납 절차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营业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30]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지급대상	금 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 고
광고분담금	가맹본부	가맹점모집광고 인지,브랜드 광고 인지 여부에 따라 다름	광고비 고지 서를 받은날 로부터 2주 이내	광고 미시행	광고시행 후	V.9번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의 비용 분담 기준 참조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판촉행사에 따라 다름	판촉비 고지 서를 받은날 로부터 2주 이내	판촉 미시행	판촉시행 후	V.9번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의 비용 분담 기준 참조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 변경 비용	자체시공	협의	협의	-	-	교체 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 하여 협의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추후 산정	협의	교육 미시행시	교육 시행 후	-
로열티	가맹본부	매출의 3%	매익월 5일	반환불가	실 비	-
점포환경 개선비용	자체시공	가맹본부가 요구시 1)간판교체 비용 2)인테리어공사 비용의 경우에 ①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협의	-	-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 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는 전액 VII. 1 참조

		점포환경개선: 20% ②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를 가맹본부가 부담				
POS기	미정	렌탈	-	-	-	렌탈료 월 3만3천원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20%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금전 지급 기일 경과시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가맹점과 가맹본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 고
매장운영 전반감독	『중식의 큰별』이 정한 규정 이외의 물품 취급 여부, 공급품 의 보관상태 등 매장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감독	수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고관리 회계처리	공급품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감독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별도로 지급하여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의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변경, 효력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가맹본부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며, 가맹본부가 대체 수단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가맹본부에게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와 가맹비, 이행보증금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을’은 지체 없이 매

장, 전화번호부, 온라인 등 영업 관련 장소에서 ‘갑’의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 노하우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갑’이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매뉴얼 등 영업 관련 자산을 ‘갑’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철거·원상복구의 비용은 ‘을’이 부담하되 ‘갑’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갑’이 부담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철거·원상회복의무를 지체한 경우에는 당사가 직접 철거·원상회복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 및 손해에 대하여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제출하는 철거·원상회복에 관한 확인서를 통하여 철거·원상회복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의 영업양수도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해지)된 경우 신규 가맹점사업자에게 업무의 인수인계 등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10%) 내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중식의 큰별』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중식의 큰별』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명 칭	관 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 고
-	-	-	-	-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중식의 큰별』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 액	비 고
-	-	-	-	-	-

2) 당사가 『중식의 큰별』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 고
짜장면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 구두 경고 2회 위반 :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이상 위반 : 계약 해지	
짬뽕			
간짜장			
차돌짬뽕			
잡채밥			
새우볶음밥			
탕수육			
간풍육			
간쇼새우			
팔보채			
양장피			
짬뽕밥			
군만두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 고
경쟁업체	당사 또는 지정업체에서 공급받은 상품 및 메뉴	가맹계약서 제29조 [원·부재료 등의 조달과 관리] ⑦ '을'은 공급 받은 원·부재료 등을 '갑'의 허 락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 거나 대여할 수 없다.	1회 위반 : 구두 경고 2회 위반 : 서면(2회이상) 시정요구 3회이상 위반 : 계약 해지	
다른 가맹점사업자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단위:원)	가격 통보 방법	비 고
짜장면	4,900	홈페이지에 공지 (유선,팩스,공문)	
짬뽕	7,000		
간짜장	7,000		
차돌짬뽕	9,000		
잡채밥	8,000		
새우볶음밥	7,000		
탕수육	20,000		
깐풍육	30,000		
깐쇼새우	35,000		
팔보채	40,000		
양장피	40,000		
짬뽕밥	8,000		
군만두	5,000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 ·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중식을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중식의 큰별	-

- ▶ 귀하의 영업지역에 당사 또는 당사의 계열사의 [중식의 큰별]과 동일한 업종의 브랜드를 추가 입점하지 않습니다.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km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 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현황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중식의 큰별』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중식의 큰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판매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해당 영업표지의 전체 상품수 중 가맹점 전용상품 수의 비중 및 온라인 전용상품 수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수의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수의 비중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중식의 큰별』의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40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이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40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제40조
○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법, 식자재 구입 및 관리 또는 서비스기법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40조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보호의무 또는 통지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40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갑'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다만, '을'이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뚜렷하게 높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0조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을’이 다음의 각호 물품 공급의 중단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당사자 간 더 이상 신뢰에 의한 가맹사업거래의 지속이 곤란한 경우 1. ‘을’이 가맹점사업자가 연체한 원·부재료 대금이 계약이행보증금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2. ‘을’이 2회 이상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3. ‘을’이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 통지를 거부하거나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4. ‘갑’의 품질관리기준을 2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5. ‘을’이 ‘갑’과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3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6. ‘을’이 ‘갑’과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7.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8. ‘을’이 ‘갑’으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제31조 제1항
○ ‘을’이 가맹점운영을 위한 각종 설비와 인허가 등의 취득과 이행을 완료치 못한 경우로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가맹점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제41조 제1항
○ ‘을’이 ‘갑’ 또는 협력업체에게 지급할 금전의 지급을 완납치 아니한 경우로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가맹점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제41조 제1항
○ 기타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개점이 연기되는 경우로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가맹점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제41조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즉시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41조 제2항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제41조 제2항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41조 제2항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제41조 제2항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41조 제2항
6.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1조 제2항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41조 제2항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 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제41조 제2항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41조 제2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사업법의 개정 및 기타 본 계약과 관련된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된 경우 ○ 가맹사업의 통일화를 위한 영업방침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 만약, 귀하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갱신시점에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 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30일 전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 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 차	기타 의무사항
상 속	상속 후 3개월 내 통지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가맹본부에 서면통지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가맹본부에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대리행사여부 통지	
업무위탁	본부 승인시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가맹본부에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업무위탁 여부 통지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중식의 큰별』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 고
중식을 전문으로 하는 업종 (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 등)	당사는 계약기간 존속 중은 물론이고 본 계약종료 후 2년 동안 경업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문 의: 운영관리팀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중식의 큰별』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 고
오전9시 ~ 오후9시	주6일	구체적인 내용은 가맹계약서 제3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 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부서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 고
1명	권장	매장관리가 가능한 인원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 고
매장청결(4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 월	가맹사업팀	
친절도(5항목)	담당자 매장 압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1회/ 월	가맹사업팀	
품질관리(5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 월	가맹사업팀	

- ▶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모드니푸드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중식의 큰별』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 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공동광고	브랜드홍보 및 상품광고	광고비의 30%	광고비 70% 중 전체 가맹점이 균분함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브랜드홍보 및 상품광고+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전체 가맹점이 균분함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공동판촉	판촉행사비	판촉비의 50%	판촉비 50% 중 전체 가맹점이 균분함	사전에 그 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 가맹본부의 승인 범위 내에서 시행	가맹점주의 70% 이상의 사전동의 충족시 실시

- ▶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 ▶ 전체 가맹점의 매출 활성화를 위한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의 경우에 당사는 가맹점주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얻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브랜드 이미지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가맹점사업자가 **제29조(원·부재료 등의 조달과 관리)**를 위반하여 자점매입을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별로 일금이천만원(₩2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2) 가맹점사업자가 **제11조(계약의 발효일과 계약기간)** 및 **제41조(계약의 해지)**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폐업처리하거나 [중식의 큰별]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일 금이십만원(₩200,000)씩 위약별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3)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종료 이후 **제43조(가맹점사업자의 비밀 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일금이천만원(₩20,000,000원)을 위약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4)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의 종료 후 당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료 익일부터 위약별로 1일 금오십만원(₩500,000원)씩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5) 당사의 지급요청일에 귀하가 위약별을 지체하거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금에 대한 지급기한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가맹본부에게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귀하는 연 이율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6) 당사는 이에 대한 채권 채무의 관계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비용을 법무비용을 포함하여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7) 당사 또는 당사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가맹본부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비 용
합 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외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계약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 인근 가맹점 10곳 현황 제공	D-46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1~32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가맹금 및 교육비 예치	D-29~30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8~29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8	
인테리어 공사 등(초도물품 포함)	- 공사 실시	D-21~27	
	- 초도물품 공급	D-1~3(3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1~3(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사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비용 항목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 고
-	-	-	-	-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 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 부담	문 의: 운 영 관리팀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 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 의: 운 영 관리팀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해 당 없 음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중식의 큰별』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 한	비 고
최초(신규)교육	◦ 본사규정 및 방향 ◦ CS교육 ◦ 상품의 소개 및 관리법 ◦ 가맹점관리 운영 교육	실습 및 점포 요리지도	가맹점 오픈전	필수 교육
정기(보수)교육	◦ 가격 및 레시피 변경시 ◦ 점주 집체교육의 필요시	본사교육장 집단교육	반기별 및 필요시	매년 이수 필수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중식의 큰별』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최소시간	비 용	비 고
최초(신규)교육	3일(18h)	2,200 (1인기준)	최초 계약시 이수 (동영상교육 대체 가능)
정기(보수)교육	수시교육	4h	필요시 산정 별도 통지함
	특별교육	8h	
	재 교육	8h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1명을 포함하여 2명까지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한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점을 부여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 역	명 칭	소 재 지
1	-	해당없음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직영점 없음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운영관리팀(Tel:1588-3064)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 (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 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별첨서류

- [별첨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별첨 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별첨 3] 가맹희망자 인근의 가맹점사업자 현황
- [별첨 4] 정보공개서 등 제공 확인서

[별첨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별첨.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
보험 계약체결을 예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비 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주)	
보험계약자	모드니푸드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보험금액	예치가맹금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별첨.3] 인근 가맹점 현황

가맹희망자 인근의 가맹점사업자 현황

※ 귀하가 장래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당사의
가맹점사업자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별첨 4] 정보공개서 등 제공 확인서

□ 가맹점희망자 보관용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 확인서	
• 가맹본부명	
• 브랜드명	
[가맹희망자]	
① 성 명	[서명 또는 인]
② 주 소	
③ 전화번호	
④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⑤ 제공받은 장소	※ 구체적으로 기재 (가맹본부 사무실, oo 커피숍 내, 이메일 등)
⑥ 수령확인문구	상기 가맹희망자 본인은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당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를 정 히 (수 령 하 였 음) ※ “수령하였음” 이라고 반드시 가맹희망자 자필로 기재요망
[가맹본부 제공 담당자]	
• 제공자명	[서명 또는 인]
※ 주의사항 : 가맹본부 담당자는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고 ① ~ ⑥의 빈칸을 반드시 가맹희망자의 자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가맹본부 보관용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 확인서

• 가맹본부명

• 브랜드명

[가맹희망자]

① 성 명

[서명 또는 인]

② 주 소

③ 전화번호

④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⑤ 제공받은 장소

※ 구체적으로 기재 (가맹본부 사무실, oo 커피숍 내, 이메일 등)

⑥ 수령확인문구

상기 가맹희망자 본인은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당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를 정
히 (수 령 하 였 음)

※ “수령하였음” 이라고 반드시 가맹희망자 자필로 기재요망

[가맹본부 제공 담당자]

• 제공자명

[서명 또는 인]

※ 주의사항 : 가맹본부 담당자는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고 ① ~ ⑥의 빈칸을 반드시 가맹희망자의 자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